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| 보도참고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시점 2024. 4.29.(월) 12:00 배포 2024. 4.29.(월) 10:00

'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, 5월31일까지 하세요

-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-

□ (신고개요)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.

○ (신고 대상) '23년에 부동산,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.

-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.

○ (신고기한) '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'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□ (신고 안내)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.

* 부동산 등 1만 명, 국내주식 등 3천 명, 국외주식 8만6천 명, 파생상품 1만 명

○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.

□ (신고·납부)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·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○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,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○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, 2회로 나누어 분납*이 가능합니다.

* (분납가능금액) 2천만 원 이하 : 1천만 원 초과분, 2천만 원 초과 시 : 전체 세금의 50%

□ (신고 도움)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·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○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'홈택스 내비게이션'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○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'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'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○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'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'*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.

* 홈택스>세금신고>양도소득세 신고>확정신고>(화면 우측) '숏폼 영상'

○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'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'을 제공합니다(5.3.개통)

* 홈택스>세금신고>양도소득세 신고>신고도움자료 조회>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

○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*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홈택스>세금신고>신고부속서류 제출>조회하기>첨부하기>'가상팩스번호 발급' 클릭

□ (유의사항)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.

○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(5.31.)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%의 무신고 가산세,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.022%(1일)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○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·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·감면이 배제되며,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·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.

□ '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'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	책임자	과 장	한지웅 (044-204-3401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수 (044-204-3412)
<협조>	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	책임자	과 장	정희진 (044-204-3471)
		담당자	사무관	정은지 (044-204-3477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진 (044-204-3487)
<협조>	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세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반재훈 (044-204-2801)
		담당자	사무관	김 민 (044-204-281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	책임자	과 장	황남욱 (044-204-2501)
		담당자	사무관	장창렬 (044-204-253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자료

1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····· 5

2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····· 6

3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 ····· 8

4.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안내 ····· 9

5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사례(국외주식 포함) ·· 10

6.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····· 13

참고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

□ **(신고대상)** '23년에 **부동산, 주식** 등을 팔고 **예정신고**를 하지 **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**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**자산 종류별**[1]로 소득금액을 **합산**하여 **신고**[2]하지 **않은 납세자**입니다.

1) (부동산 등) 부동산·부동산에 관한 권리·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
(주 식 등) 상장주식(대주주, 소액주주 장외거래),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

2)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·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

-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**국외주식**과 **파생상품** 거래를 통해 **양도소득**이 **발생**한 **납세자**들도 **신고 대상**에 해당합니다.

□ **(신고기한)** **'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**는 **'24년 5월 31일**까지 양도소득세를 **신고·납부**해야 합니다.

<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>

○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,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

자산		예시	예정신고			확정신고 대상
종류	세부 항목		1회	2회		
				합산[1]	미합산[2]	
부동산 등	• 부동산(토지,건물)	1	×	-		○
	• 부동산에 관한 권리(분양권 등)	2	○	○		×
	• 기타자산(회원권 등)	3	○		○	○
주식 등	• 국내주식 등[3]	4	×	-		○
		5	○	○		×[4]
		6	○		○	○
	• 국외주식	7	예정신고 의무 없음			○
파생상품	• 파생상품	8	예정신고 의무 없음			○

1)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
2)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
3) (신고대상) 상장주식 대주주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, 비상장주식 주주
4) 단,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

□ **(안내대상자)** 올해 **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**은 **11만 명***입니다.

* 부동산 등 1만 명, 국내주식 등 3천 명, 국외주식 8만6천 명, 파생상품 1만 명

참고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

□ **(미리채움 서비스)**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**예정신고한 내역**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**미리채움**을 **제공**하고 있습니다.

-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-

구 분	제공 내용
부동산 등	▪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·양도가액 등(등기부 기재사항)
	▪ 현금 영수증 자료
	▪ 취득세(등록세 포함) 자료
	▪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
공 통	▪ 예정신고 안내 물건, 예정신고 자료, 감면신고 내역,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등

□ **(내비게이션 서비스)**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**신고서 작성**부터 **납부**까지 **순차적**으로 **편리**하게 **진행**할 수 있는 **내비게이션 서비스**를 제공합니다.

○ 로그인하면 팝업되어 안내문, 과거 신고내역, 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, **신고서 작성하기**를 클릭하면 **작성화면**으로 **바로 이동**합니다.



□ **(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)** 신고서 작성사례, 오류 사례 등 **확정신고 도움자료**를 **한번**에 **확인**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**서비스**를 5월 3일부터 **제공**합니다.

* (홈택스) 세금신고>양도소득세>신고도움 자료 조회>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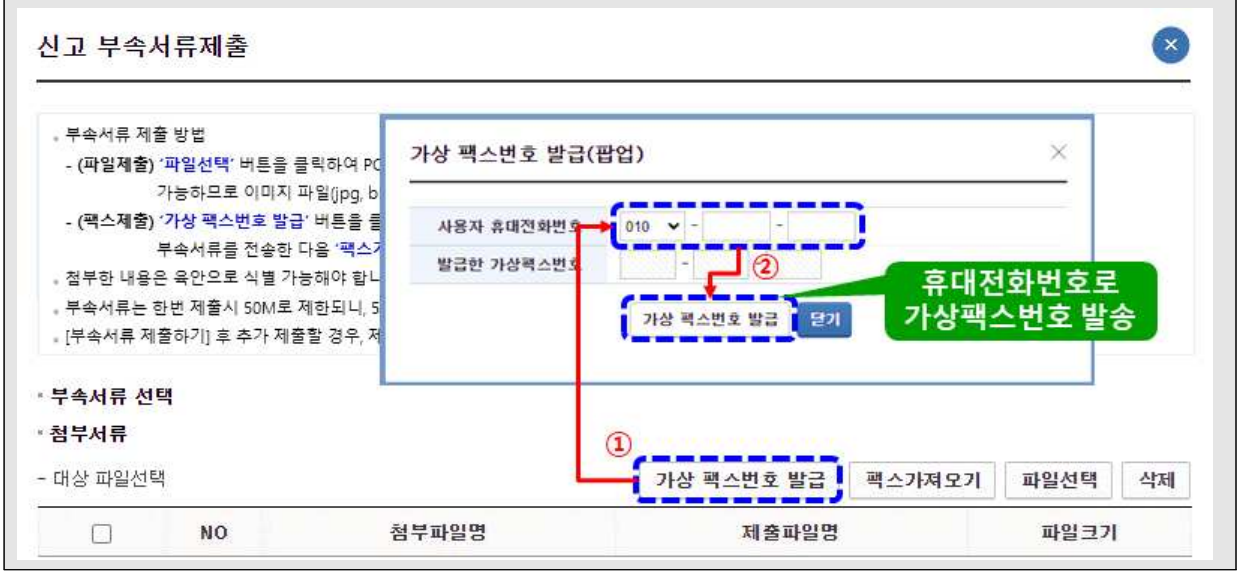
□ **(편리한 증빙서류 제출) 손택스**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**신고 증빙서류**는 **스마트폰**으로 **사진**을 찍어 **간편**하게 **제출**할 수 있으며, **'24.3월**부터는 납세자별 가상팩스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**제출**이 가능합니다

* (홈택스) 세금신고>양도소득세신고>확정신고>신고 부속·증빙서류 제출

①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'첨부하기' 클릭



②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'가상 팩스번호 발급' 클릭



참고 3 **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**

구 분	주 요 내 용
전자신고 (PC,모바일)	○ 대상자: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○ 접근 방법: (PC이용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*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 뜨는 내비게이션에서 '신고서 작성하기'를 클릭하거나 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 신고 → 확정신고 → 정기신고 선택 (모바일이용) 국세청 손택스 * 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 신고 → 양도소득세 일반신고(확정신고) 선택 ○ 이용 시간: 06:00~다음날 01:00(5.1.~5. 30.) * 신고 마지막 날(5. 31.)은 24:00까지 운영 ○ 확정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숏폼 영상 제공 - [양도소득세 확정신고] ①양도인·양수인 입력방법, ②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입력방법, ③세액계산 및 확인 입력방법, ④신고서 제출방법 * 홈택스>세금신고>양도소득세 신고>확정신고>(화면 우측) '숏폼 영상' 
우편신고 방문신고	○ 신고기한: '24. 5. 31.(금) 18:00까지 ○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

참고 4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안내

구 분	주 요 내 용
홈택스 (PC,모바일)	○ 국세청 홈택스 납부(공동·금융·간편·생체인증 접속) -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☞ 납부/고지·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-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☞ 납부/고지·환급 → 세금납부 → 자진납부 선택 - 타인의 세금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☞ 납부/고지·환급 → 세금납부 → 타인세금납부 선택 ○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* 납부 * 카카오페이, 삼성페이, 페이코, 네이버페이, 앱카드(KB국민, 삼성, 신한, 현대, NH농협, 롯데) ○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*는 납세자가 부담 * 납부세액의 0.8%(체크카드는 0.5%) ○ 납부시간: 07:00 ~ 23:30(연중 무휴)
금융결제원 (인터넷지로, 카드로택스)	○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(www.giro.or.kr, www.cardrotax.kr) ○ 공동·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국세〉자진납부를 선택하여 기본정보(납세자 정보, 세목, 납부금액 등)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○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납부 ○ 납부시간: 00:30 ~ 23:30(연중 무휴)
금융기관 (수납창구, CD/ATM, 인터넷뱅킹 등)	○ (수납창구) 현금, 계좌이체(가상계좌) 납부 ○ (CD/ATM) 국세/지방세등 납부*, 계좌이체(가상계좌) 납부 * '0126'으로 시작하는 국세납부번호(19자리)로 조회하여, 현금/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(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, 분할납부는 불가함) ○ (인터넷뱅킹) 공과금(국세/지방세등) 납부, 계좌이체(가상계좌) 납부 ○ (ARS) 계좌이체(가상계좌) 납부 ○ (공과금수납기*) 계좌이체(가상계좌) 납부 *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○ 납부시간: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
세무서 (무인수납 창구)	○ (무인수납창구*) 신용카드 납부 *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

참고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(국외주식 포함)

1 **(부동산 합산신고)** '2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·납부한 경우

○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	확정신고
	주택(6월)	상가(8월)	
양도소득금액	180,000	60,000	240,000
기본공제	2,500	-	2,500
과세표준	177,500	60,000	237,500
세율-누진공제	38%-19,940	24%-5,760	38%-19,940
산출세액	47,510	8,640	70,310
기신고·결정세액	-	-	56,150*
납부할세액	47,510	8,640	**14,160**

* 기신고·결정세액(56,150천 원) = 47,510천 원 + 8,640천 원

○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	확정신고
	주택(6월)	상가(8월)	
양도소득금액	180,000	△10,000	170,000
기본공제	2,500	-	2,500
과세표준	177,500	△10,000	167,500
세율-누진공제	38%-19,940	-	38%-19,940
산출세액	47,510	-	43,710
기신고·결정세액	-	-	47,510*
납부할세액	47,510	-	**△3,800**

* 기신고·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

2 **(국내·국외주식 손익통산)** '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**확정신고·납부**하는 경우

○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*하여 확정신고

*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,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(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)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확정신고		
	국내주식 (중소기업 대주주 외)	국내주식 (중소기업 대주주 외)	국외주식	계
양도소득금액	110,000	110,000	△67,000	43,000
기본공제	2,500	-	-	2,500
과세표준	107,500	-	-	40,500
세율	10%	-	-	10%
산출세액	10,750	-	-	4,050
기신고세액	-	-	-	10,750
납부할세액	10,750	-	-	**△6,700**

○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확정신고		
	국내주식 (일반법인 대주주)	국내주식 (일반법인 대주주)	국외주식	계
양도소득금액	342,500	342,500	100,000	442,500
기본공제	2,500	2,500	-*	2,500
과세표준	340,000	340,000	100,000	440,000
세율-누진공제	25% - 15,000	25% - 15,000	20%	20%, 25%
산출세액	70,000	70,000	20,000	90,000
기신고세액	-	-	-	70,000
납부할세액	70,000	-	-	**20,000**

* 국내·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(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)

3 **(국내주식 합산신고)** '23년 중 국내주식을 **2회 이상 양도**하고 **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·납부**한 경우

○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	확정신고
	'23.8월 (일반법인 대주주)	'24.2월 (일반법인 대주주)	
양도소득금액	150,000	200,000	350,000
기본공제	2,500	-	2,500
과세표준	147,500	200,000	347,500
세율-누진공제	20% - 0	20% - 0	25%* - 15,000
산출세액	29,500	40,000	71,875
기신고·결정세액	-	-	69,500
납부할세액	29,500	40,000	**2,375**

*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%, 3억 원 초과분은 25% 세율 적용

4 **(파생상품 합산신고)**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(예정신고 없음)

○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

*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(차손)은 합산(통산)하지 않음

(천 원)

구 분	확정신고		
	국내파생상품	국외파생상품	계
양도소득금액	200,000	△70,000	130,000
기본공제	-	-	2,500
과세표준	-	-	127,500
세율	-	-	10%
산출세액	-	-	12,750
기신고세액	-	-	-
납부할세액	-	-	**12,750**

* 기본세율은 20%(단일)이나,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%(단일) 적용

참고 6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

1 주식

구 분	내 용
과세범위	· (국내주식) 상장주식 중 대주주*(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) 및 비상장주식 거래 * 코스피(1%·10억 원 이상), 코스닥(2%·10억 원 이상), 코넥스(4%·10억 원 이상) · (국외주식)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,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
양도가액	·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
필요경비	· (취득가액)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· (양도비용) 증권사 수수료 등
양도소득	·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('20.1.1. 이후 양도분) *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,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
양도소득 기본공제	·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
세 율	· 국내주식: 10% , 20%, 20%~25%, 30% 대주주(상장·비상장) / 소액주주(상장 장외·비상장) 과세표준 기준* 20~25% / 중소기업 주식 10% 중소기업 외&1년미만 30% / 중소기업 외 주식 20% *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%, 3억 원 초과분 25% 누진세율 적용 · 국외주식: 20% (중소기업 주식은 10%)
신고납부	· 국내주식: 예정 및 확정 신고·납부 · 국외주식: 확정 신고로 종결(예정신고 없음)

2 파생상품

구 분	내 용
과세범위	· (국내)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, 주식워런트증권, 차액결제거래 · (국외) 장내파생상품(장외 일부 포함)
양도가액	·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
필요경비	· (취득가액)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· (양도비용) 증권사 수수료 등
장기보유특별공제	· 적용하지 않음
양도소득	·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·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
양도소득기본공제	· 연 250만 원
세 율	· 10%(기본세율은 20%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)
공제.감면	· 해당없음
신고납부	· 확정신고로 종결 (예정신고 없음)